

충청북도중학교학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1. 11. 22

문교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결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1년 11월 12일

○ 회부일자 : 1991년 11월 13일

다. 상정일자 : 제73회 임시회

○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1. 11. 21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관리국장 김근학)

가. 제 안 사 유

행정동의 분리 및 통의 신설에 따른 중학교 학군(구)의 조정과
면의 명칭 변경에 의한 당해지역 학구명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
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1) 행정동의 분동으로 인한 학군(구)의 조정
 - 가경, 복대동 : 복대1동과 가경, 복대2동으로 분동
 - 봉명, 송정동 : 봉명1동과 봉명2, 송정동으로 분동
- 2) 행정통 신설에 따른 학군(구)의 조정
- 3) 면 명칭의 변경 (영동군 황금면 → 영동군 추풍령면)에 따른 소속지역 학구명 변경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영만)

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, 청주시의 행정동 분리 및 통,반의 신설과 영동군의 면 명칭(황금면 → 추풍령면)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학군(구)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5. 특 른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실 사 결 과 : 원 안 가 결.

7. 소수 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가. 충청북도중학교군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